

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1.11.29		16		
2	2012.10.31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

- 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.)교원 업적평가 위원회 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.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전임교원)** 전임 교원이라 함은 조교수, 부교수, 교수를 말한다.<개정 2012.10.31>
- 제3조 (위원회 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, 각 학부(과)장, 부학부장,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전임교원 23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07.12.20, 2011.11.29>
-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[전문 개정 2008.6.9]
- 제4조 (위원장 등)**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<개정 2008.6.9>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다.
- 제4조의2 (평가)** 교원업적평가는 각 영역별 2인 1조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위원 본인의 업적평가는 본인이 평가할 수 없다. 단, 연구영역의 평가는 학제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된 평가위원이 소속 학부(과) 교원의 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.[본조 신설 2008.6.9]
- 제5조 (심의)** 위원회는 교원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제6조 (의결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 (회의주관)** ① 위원회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
- ②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- 제8조 (보고)**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, 비치하고 교원 업적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07.12.20>
- 제9조 (비밀유지)** 위원회 위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재심위원회)**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교원 업적평가 재심위원회(이하 '재심위원회'라 한다.)를 구성한다.
- ② 재심위원회는 교원 업적평가 위원장이 평가위원 중 영역별 2인씩 6인으로 구성한다.
- ③ 재심위원회의 의결, 회의주관, 회의록,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교원 업적평가 위원회와 동일하다.
- 제11조 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.